

## 【 11 】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제출연월일 : 1999. 11. 1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 수정이유

향후 행정여건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의 자격기준 및 보수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상담실의 위치를 양주군 관내에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상급기관의 지침을 준용토록 한 조항은 법규의 체계상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 수정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근거되는 법을 목적조항에 명시함(안 제1조)
- 나. 상담실의 위치를 “회천읍 덕정리 138-42번지”에 두도록 한 것을 “양주군 관내에 두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3조)
- 다. 직원의 자격기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10조)
- 라. 직영 원칙으로 운영토록 한 조항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비보조금”을 “국·도비보조금”으로 수정 (안 제15조)
- 마. 조례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기본법,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양주군재무회계규칙, 문화관광부지침 및 경기도지침을 준용토록 하던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

##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양주군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양주군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양주군 관내에 둔다.

안 제4조제4호중 “상담실운영위원회”를 “상담실운영협의회”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직원의 자격)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5조제1항중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를 “직영 또는”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비보조금”을 “국·도비보조금”으로 한다.

안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 수정안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주군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양주군청소년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138-42번지에 둔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양주군 관내에 둔다
제4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생략) 4. 상담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 8.(생략)	제4조(상담실의 업무)----- ----- 1. ~ 3.(원안과 같음) 4. 상담실운영협의회----- 5 ~ 8 (원안과 같음)
제6조(직원의 자격)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담수행능력 확보 등을 위한 자격기준 변경요인 발생시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제정하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6조(직원의 자격)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문화관광부에서 제정하는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에 의한 보수기준에 준한다.	제10조(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상담실 운영방법) ① 상담실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생략)	제15조(상담실 운영방법) ①----- ----- 직영 또는 ----- ----- ②(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p>③상담실 운영은 <u>도비보조금</u> 및 군비로 운영하며, 위탁운영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실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국·<u>도비보조금</u>----- ----- -----</p>
<p><u>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양주군재무회계규칙, 문화관광부지침 및 경기도지침을 준용한다.</u></p>	<p><u>&lt;삭 제&gt;</u></p>